2022년도 우수기업연구소육성사업(ATC+) 신규 공고 관련 주요 FAQ

2022. 1.



1. 게시 사항

| Version | 게시일 | 게시(수정,보완) 내용 | 페이지 |
|---------|-------------|--------------|-----|
| 1 | 2022.01.07. | 주요 FAQ 게시 | - |

<기본 사항>

1. 신규과제 접수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은 어디로 하나요?

답 변

- 2022 ATC+ 공고 관련 문의처
- **온라인 시스템 접수 관련**은 R&D 상담콜센터(☎1544-6633)
- **과제관련** 문의사항은 융합신산업팀(☎053-718-8345, 8362, 8361)
- R&D 샌드박스 문의사항은 전략기획팀(☎042-712-9111)
- 2. 지원분야 관련, '산업기술 R&D 투자전략 분야(5개영역, 25대분야)' 세부 추진체계에 부합해야만 지원 가능한가요?

답 변

- 동 사업은 산업부 산업기술 R&D 투자전략 분야 內 자유공모이므로 상기 분야에 부합해야 합니다.
- <u>부합여부는 첨부자료를 바탕으로</u> 평가위원회(연구개발과제평가단)에서 판단합니다.
- 3. 과제 기간은 반드시 4년이어야 하나요?
 - ㅇ 연구범위, 내용에 따라 기간을 자체적으로 설정 가능합니다.

답 변

다만, 공고시 제시한 예산과 지원기간에 맞추어 신청할 것을 권장하나, 과제기간을 단축하더라도 평가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닙니다.

4. 기존 ATC 또는 월드클래스 사업을 수행했으며, 현재 해당 과제들이 종료된 상태인데, ATC+에 지원 가능한가요?

사업 종료 여부와 관계 없이, ATC 또는 월드클래스 300 R&D
 주관연구개발기관으로서 선정된 이력이 있으면 ATC+의
 주관연구개발기관으로 신청이 불가합니다.

답 변

| 국내 산학연 개방협력(해외 산학연 개방협력은 WC300만 불가) | | | | | |
|-------------------------------------|---------------|------------|-----|--|--|
| ATC/WC300 | | ATC+ 신청유형 | | | |
| 선정 시 참여유형 | | AICI COTTO | | | |
| 주관연구개발기관 | \rightarrow | 공동연구개발기관 | 가능 | | |
| 공동연구개발기관 | \rightarrow | 주관연구개발기관 | 가능 | | |
| 공동연구개발기관 | \rightarrow | 공동연구개발기관 | 가능 | | |
| 주관연구개발기관 | \rightarrow | 주관연구개발기관 | 불가능 | | |

5. 사단법인 단체도 공동연구개발기관으로 참여 가능한가요?

답 변

- 연구기능이 있다면 공동연구개발기관으로 참여 가능하며,공직유관단체가 아닌 경우에는 지원제외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해당기관의 장에 대한 신용조회를 진행할 예정임
 - '개인정보 및 과세정보제공활용동의서' 서식에 반드시 대표자가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함

6. 신청요건의 연구전담요원 8~30인과 참여연구자 기준은?

답 변

○ 신청요건의 8~30인은 접수마감일 기준 기업부설연구소 연구개발 인력현황 內 '연구전담요원'만 산정

o 다만, 실질적으로 기업부설연구기관장과 연구보조원도 연구에 참여하므로, 참여연구자로 과제 참여 가능

7. 과제 2개 이상 신청 가능한가요?

S 사업의 지원유형 중 국내 산학연 개방협력과 해외 산학연 개방협력에 주관연구개발기관으로 동시 신청한 경우에는 해외 산학연 개방협력의 신청자격은 상실됩니다.

답 변

- 같은 유형에 2개 이상 주관연구개발기관으로 동시 신청한 경우 과제번호가 가장 빠른 과제를 제외한 나머지 과제의 신청자격은 상실됩니다.
- 공동연구개발기관으로 동시 신청하는 경우는 가능하나, 3책5공 등 제한조건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8. 해외 MOU 서식이 있습니까?

답 변

o MOU 작성 양식은 따로 없으며, 주관연구개발기관과 해외기관 간 자유양식으로 협약하셔서 제출하면 됩니다.

o 다만, 형식적 요건(각 기관대표의 서명)을 갖추고, 공동연구 범위, 교류계획. 성과 공유계획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 3 -

<연구개발비 편성 관련>

9. 1차년도 개발기간만 9개월인데 해당연도 신청금액을 조정해야하나요?

답 변

- 개발기간에 상관없이 1~4차년도 모두 동일한 금액으로 신청하셔도 됩니다.
 - * e.g. 1차년도 5억원. 2~4차년도 각 5억원(국내 산학연 개방협력)

10. '주관연구개발기관 60%이상 배정'이 무슨 말인가요?

답 변

이 예를 들어 컨소시엄 전체에 정부지원연구개발비 5억원 신청 시,
 주관연구개발기관에 3억원 이상 배정하고 나머지 금액을
 공동연구개발기관/해외기관에 배정하여야 합니다.

11. R&D 집약도 상세 산정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답 변

현재(공고일 기준) 작성 서식 배포가 안 되어 산정방식 문의가
 많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해당 내용은 작년(2021년) 공고에 첨부된
 서식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2. 최소(의무) 편성 인건비 비중(45%) 계산은 어떻게 하나요?

- 해당연도 컨소시엄 전체의 인건비(학생인건비 및 현금, 현물 포함)에서 해당연도 총 연구개발비*를 나눈 비율이 각 연도별로 45% 이상 되어야 합니다.
 - * 해당연도 컨소시엄 전체의 정부지원연구개발비와 기관부담연구개발비(현금+현물)의 합)

13.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비율 및 기관부담연구개발비 현금 부담비율에 따른 구체적인 금액 편성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 **각 연구개발기관(수행기관)별로 각 연차마다** 해당 비율로 편성
- o 코로나 특별지침 적용은 '22년 한시 적용되는 선택사항이며, '23년 이후는 기본사항으로 설정하시면 됩니다.

| 연구개발기관 유형 |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 비율 (기본사항) | 코로나 특별지침 적용 시 (선택사항, '22년 한시 적용 가능) | |
|--------------|---------------------------|--|--|
| 중소·중견기업이 | 해당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비의 33% 이하 | | |
| 아닌 기업 | 예상 전투계실기전 전투계실미의 33% 이야 | | |
| 중견기업 | 해당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비의 50% 이하 | 해당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비의 65% 이하 | |
| 중소기업 | 해당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비의 67% 이하 | 해당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비의 80% 이하 | |
| 그 외 | 해당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비의 100% 이하 | | |

| 연구개발기관 유형 | 기관부담연구개발비 현금부담비율 | 코로나 특별지침 적용 시 | | |
|--------------|------------------------------|----------------|--|--|
| 중소·중견기업0 | 해당 연구개발기관 기관부담 연구개발비의 60% 이상 | | | |
| 이닌 기업 | | | | |
| 중견기업 | 해당 연구개발기관 기관부담 | 해당 연구개발기관 기관부담 | | |
| | 연구개발비의 50% 이상 | 연구개발비의 10% 이상 | | |
| 중소기업 | 해당 연구개발기관 기관부담 | 해당 연구개발기관 기관부담 | | |
| | 연구개발비의 40% 이상 | 연구개발비의 10% 이상 | | |
| 수요기업인 | | | | |
| 공동연구개빌 | 해당 연구개발기관 기관부담 연구개발비의 40% 이상 | | | |
| 기관 기관 | | | | |
| 그 외 | 필요시 부담 | | | |

- ※ 중소기업의 정부지원연구개발비 3억원(300백만원)을 받는 경우 예시(기본사항 기준 예시, 코로나 특별지침 선택 시 비율 상이)
- ① 기관부담연구개발비(현금+현물): 300백만원 / 67 * 33
 - = 148백만원(반올림) 이상 책정
- ② 기관부담연구개발비(현금): (결정된 ① 금액) * 0.4 이상 책정
- ③ 기관부담연구개발비(현물): ① ②
- ④ 해당연도(연차) 연구개발비
 - = 정부지원연구개발비 + 기관부담연구개발비(현금+현물)



<R&D 샌드박스 관련>

14. R&D 샌드박스 신청자격에 해당하는 기관만 신규 과제를 신청 할 수 있나요?

답 변

- R&D 샌드박스 신청자격은 과제 지원자격이 아닙니다. 즉, R&D 샌드박스 신청자격이 없는 기관도 신규 과제 신청이 가능합니다.
 - * R&D샌드박스는 수행기관이 혁신적 연구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과제 수행단계에서 R&D 규제를 완화하는 특례제도로, 과제 신청자격과 무관합니다.
- 15. 과제 신청 시 R&D 샌드박스를 반드시 신청해야 하나요? 미 신청 시 평가 과정에서 불이익이 있나요?

답 변

- R&D 샌드박스 신청은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선택 사항입니다.
 또한, R&D 샌드박스는 선정 평가 가점 또는 감점 대상이 아니므로, R&D 샌드박스 신청 여부가 과제의 평가 및 선정 과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 16. R&D 샌드박스 신청요건(최근 5년간 최종평가 결과 우수 등)은 타부처 사업의 우수성과도 해당되나요?

답 변

- <u>산업통상자원부 소관 사업의 우수성과만 해당</u>되며, 이외 부처 사업의 결과는 R&D 샌드박스 신청자격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17. 과제 선정 후 R&D 샌드박스를 따로 신청할 수 없나요?

답 변

O 연구개발계획서 제출 단계에서만 R&D 샌드박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과제에 선정된 이후에는, R&D 샌드박스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18. 과제신청 시 R&D 샌드박스 신청서와 증빙서류를 모두 제출해야 하나요?

답 변

○ 연구개발계획서 제출 단계에서는 R&D샌드박스 신청여부만 선택하고, 과제에 선정된 이후에 산업기술R&D정보포털(itech)에 샌드박스 심의를 위한 서류 작성 및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 과제 선정 확정통보 시 별도 안내 예정

19. 공동연구개발기관도 R&D 샌드박스 적용이 가능한가요?

답 변

 O
 R&D 샌드박스는 과제 단위로 적용되므로, 해당 과제를 수행하는

 공동연구개발기관 또한 R&D 샌드박스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재무제표 제출 관련>

20. R&D 집약도 관련 2년치 재무제표로 판단한다고 되어 있는데, 제출서류 목록에는 3개년도 재무제표를 요구합니다. 어느게 맞는건가요?

답 변

O R&D 집약도뿐만 아니라 한계기업 여부(최근 3개년도 연속 이자보상비율 1미만) 등을 검토하기 위해 <u>3개년치 모두</u> 필요합니다.

21. 기존과 달리 회계감사보고서 또는 재무제표는 온라인 재무정보 시스템으로 제출만 하면 되나요?

 아 과거 신규과제 접수 시 영리기관(상장사 제외)은 직전년도로부터 최근 3년 결산자료 제출과 재무상태표 관련 내용을 입력하여 제출시간에 많은 시간이 소요 되어 제출서류 간소화 제도개선 차원에서 도입하였습니다.

답 변

- 온라인 재무정보시스템에 제출을 희망하시는 분은 아래 사이트에 접속하여 제출완료하시면 됩니다.
 - * https://www.findsystem.co.kr/fs/FSDSI05R1.pop?instCd=78
 - 상장사(거래소, 코스닥) 기업은 기존과 동일하게 추가 제출 필요 없음(이미 신용정보기관에 DB화가 되어 있음)

22. 기존 신용정보기관(Ked)를 이용 중이며, 이미 관련 자료를 제출한 적이 있습니다. 연계하여 DB를 활용 하나요?

- o 해당 시스템은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사업 공고의 신청 자격 활용을 위해 신용정보기관(Ked)와 MOU를 통해 도입되었으며 신용정보기관(Ked) DB를 연계하여 활용합니다.
 - 수행중인 연구개발기관의 약84%가 이미 직전년도 3년 결산자료 (2018, 2019, 2020) 재무정보에 대하여 Ked에 등록 중으로 확인됨

23. 기존 신용정보기관(Ked)과 DB를 연계하여 재무정보를 활용한다면, 기존 DB를 보유하여 제출이 불필요한 기관과 DB미보유로 제출이 필요한 기관 확인은 어떻게 하나요?

- 신규과제신청 과정에서 재무정보가 조회가능하며, 상세내용은 확인방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조회가 되지 않는 영리기관이 있다면, 신청기관이 해당 연구개발기관에 안내하여 해당기관이 find시스템을 통해 제출 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미조회되는 연도의 결산 정보 또는 국세청에 수정 신고하여 정보가 상이한 기관은 find 시스템으로 제출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확인방법) https://itech.keit.re.kr > 로그인 > 연구과제수행 > 신규과제신청 > 2단계 > 기관 및 인력 > 기관정보 입력 > 재무정보 > 기관별 한국기업데이터(KED) 데이터 조회가능 여부확인
- ※ 조회가 되지 않는 기관은 아래의 사이트에서 제출
- https://www.findsystem.co.kr/fs/FSDSI05R1.pop?instCd=78

24. 과제접수 기간 내에 온라인 재무정보시스템을 통해 제출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불이익이 있나요?

답 변

- 아 과제 접수 기간내에 미제출에 대한 불이익은 없으나, 전문기관 담당자의 사전검토기간에 제출서류 보완 요청에 불응할 경우 제출서류 미흡으로 평가 상정이 불가 할 수 있습니다.
 - 과제접수기간 내에 제출을 못한 경우, 전문기관 담당자의 사전검토기간까지 find시스템으로 제출 가능합니다.

25. 온라인 재무정보시스템 활용을 미희망 하는 기관의 경우는 어떻게 하나요?

아 미희망 경우에는 신규 공고에 대한 전문기관의 신규 과제 접수 완료 후 사전검토기간 동안에 과제담당자가 소명요청 안내드릴 예정이오며, 소명 요청 시 국세청에서 발급하는 표준재무제표증명원(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등)을 업로드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업로드 방법) https://stella.keit.re.kr > 로그인 > 소명요청